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757호 2013년 3월 13일(수)

공 고

- 속초시립풍물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회 람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속초시립풍물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립풍물단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3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립풍물단 설치·운영 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속초시립풍물단 상임단원에 대한 승급기준을 유사 예술단의 수준과 비교하여 형평성 있게 개선함으로써 공연문화 개발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한 양질의 공연문화를 창출하여 시민 및 관광객에게 차원 높은 공연문화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공연예술단 의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속초시립풍물단 상임단원(수석단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 근거를 6년 이상 복무하고 평정등급이 “수”인 단원으로 구체화 함(안 제4조 제5항)
- 나. 상임단원 악장의 등급을 “일반직 8급”에서 “7급”으로, 수석단원을 “일반직 9급”에서 “8급”으로, 단무장을 “일반직 9급”에서 “8급”으로 단원의 직렬 등급표를 조정함(안 제14조 제1항 제1호 별표 1)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학예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217-030/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박물관 학예담당(전화: 033-639-2976, FAX: 033-639-2430)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속초시박물관 담당 정종천(전화:033-639-243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립풍물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립풍물단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립풍물단 설치·운영조례”를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속초시립풍물단(이하 “풍물단”이라 한다)”를 “속초시립풍물단”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풍물단”을 “속초시립풍물단(이하 “풍물단”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기량이 우수한 자를”을 “6년 이상 단원으로 복무하고 전형위원회 평정 등급이 ‘수’ 인 사람을”으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조 제11호·제1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용어의 기준”을 “용어의 뜻”으로 하고, 같은항 제1호·제2호·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8조(제3항제1호,제2호,제3호)·제10조(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제8호,제9호,제10호,제1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상임단원의 직렬 등급표

구 분	직 렬 등 급	초임호봉
약 장	일반직 7급 공무원	3호봉
수석단원	일반직 8급 공무원	3호봉
단 무 장	일반직 8급 공무원	3호봉
단 원	일반직 9급 공무원	3호봉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u>속초시립풍물단(이하“풍물단”이라 한다)</u>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u>속초시립풍물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구성) ① 풍물단의 정원은 악장 1인을 포함한 15인으로 구성한다.</p> <p>② 생략</p> <p>③ 생략</p>	<p>제3조(구성) ① <u>속초시립풍물단(이하“풍물단”이라 한다)</u>의 정원은 악장 1인을 포함한 15인으로 구성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4조(단원의 자격과 위촉) ①~④ (생략)</p> <p>⑤ 수석단원은 <u>기량이 우수한 자를</u> 단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한다.</p>	<p>제4조(단원의 자격과 위촉) ①~④(현행과 같음)</p> <p>⑤ 수석단원은 <u>6년 이상 단원으로 복무하고 전형 위원회 평정등급이 “수” 인 사람</u>을 단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한다.</p>
<p>제10조(단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p>	<p>제10조(단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u>각 호의 어느 하나</u>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p>
<p>제13조(보수 및 실비보상)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단원에게는 <u>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u>에 의해 지급되는 모든 보수 및 제수당과 예능수당, 직책수당을 지급하며 <u>각 용어의 기준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u></p> <p>1. “보수 및 제수당”이라 함은 매월 또는 분기, 반기, 년1회 등 단원에게 지급 하는 본봉, 기말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가산금, 효도휴가비, 연가보상금, 복리후생비 등을 말하며 단원별 직렬 등급은 별표1과 같다.</p>	<p>제13조(보수 및 실비보상)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단원에게는 <u>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u>에 의해 지급되는 모든 보수 및 제수당과 예능수당, 직책수당을 지급하며 <u>각 용어의 뜻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u></p> <p>1. “보수 및 제수당”이란 매월 또는 분기, 반기, 년1회 등 단원에게 지급 하는 본봉, 기말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가산금, 효도휴가비, 연가보상금, 복리후생비 등을 말하며 단원별 직렬 등급은 별표1과 같다.</p>

2. “예능수당”이라 함은 단원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직책수당”이라 함은 직무의 책임성, 곤란성 기타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월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1

상임단원의 직렬 등급표

구 분	직 렬 등 급	초임호봉
악 장	일반직 8급 공무원	3호봉
수석단원	일반직 9급 공무원	3호봉
단 무 장	일반직 9급 공무원	3호봉
단 원	일반직 9급 공무원	3호봉

2. “예능수당”이란 단원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직책수당”이란 직무의 책임성, 곤란성 기타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월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1

상임단원의 직렬 등급표

구 분	직 렬 등 급	초임호봉
악 장	일반직 7급 공무원	3호봉
수석단원	일반직 8급 공무원	3호봉
단 무 장	일반직 8급 공무원	3호봉
단 원	일반직 9급 공무원	3호봉